#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68 발의연월일: 2020. 7. 22.

발 의 자:기동민·김원이·김영배

조오섭 · 정춘숙 · 박용진

황운하 • 양정숙 • 이정문

이상민 · 한준호 · 인재근

김회재 · 강훈식 의원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환자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하거나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군인연금을 받고자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 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 써 군인연금 지급심사 및 전공사상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4호의4 및 제18호 신설).

#### 참고사항

이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5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5호) 및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제14호의4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가. 「군인연금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직유족급 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 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요청하는 경우
- 18. 「군인사법」 제54조의5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하여 전사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생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③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	
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	
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	
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	
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	
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14의3. (생 략)	1. ~ 14의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1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u>
	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
	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
	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
	하는 경우
	가. 「군인연금법」 제54조제
	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직유족급여와 관련하여

15. ~ 17.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요청하는 경우

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5

2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
관(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
여 요청하는 경우

15. ~ 17. (현행과 같음)

18. 「군인사법」 제54조의5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 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 원회가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하여 전사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④ (현행과 같음)